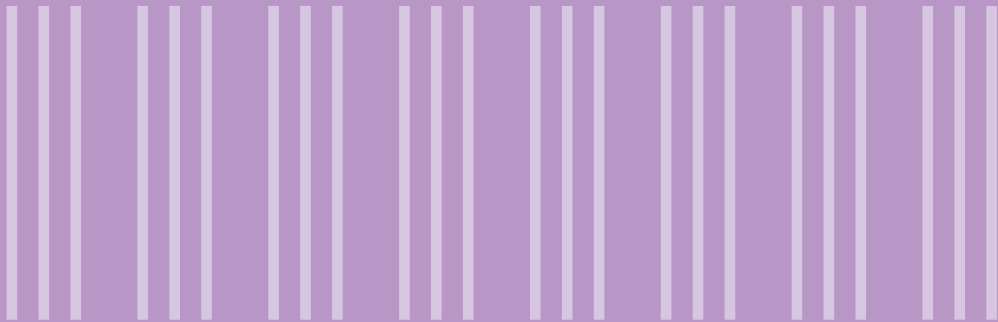




2023.12.31.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미래의제 | 23-12호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김태경 부연구위원

요약

- 원폭피해자 입법, 왜 필요한가
 - 한국인 원폭피해자 입법 쟁점과 방향
 - 일본 원폭피해자 지원 사례
 - 결론
- 참고문헌

요약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국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응하여 원폭피해자들 관련 입법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내 연구가 필요함
-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국가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2003년 2세대 원폭피해자 활동가 김형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본격화되어 2016년 12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5월 시행됨
- 현행법 개정 노력이 지속되어왔고 21대 국회에서 2·3세대 원폭피해자 인정, 국가적 추모기념사업 등 관련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 한국인 원폭피해자 개정 입법 쟁점

- 가장 논쟁이 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는 문제는 일본 사례, 관련 부처 입장 등에 비추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
 - 현행 일본 피폭자 원호법체계는 후손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세 피폭자 인정 소송은 패소
 - 한국 정부가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게 되면 피폭자 개념정의와 관련해 대외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법이 규정한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 주도의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개정안의 쟁점
 - 원폭피해자들이 집중된 합천에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가 원폭피해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에 대한 요구임
 -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추모기념 사업의 이행은 원폭피해자들의 숙원사업에 해당함

■ 일본 원폭피해자 원호 체계 비교적 검토

- 1950년대 일본은 피폭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했고 피폭자 원호체계는 피폭자들의 대 정부 소송과정에서 진화해옴
- 피폭자 정의, 범위에 관련해 최근 주목되는 것은 소위 ‘검은 비’ 소송의 결과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발생한 ‘검은 비’ 관련 피폭자들을 피폭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에 폭심지로부터 반경에 따른 피폭자 정의가 조정되었다는 점
- 피폭자 2세 소송의 지속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체계상 피폭자의 정의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외 피폭자 인정 등을 거쳐 변화해왔다는 점은 착목할 지점

요약

■ 한국인 원폭피해자 입법 방향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국가적 인정과 통합은 이주, 식민, 전쟁, 피폭, 분단, 한일관계, 평화구축 등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임
- 한국 사회가 원폭피해자들에 가진 책임은 이들의 귀환 이후 원폭피해자 문제의 중층적 역사성, 정치적 함의를 마주하는 대신 한일협정 협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인정투쟁’을 오랜 무관심과 소외 속에 남겨두었다는 점
- 한반도, 역내 비핵평화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국회는 인류 유일의 핵무기 참사를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갖는 상징적 지위에 눈을 돌리고 이들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인정, 후손들에 이르는 고통을 치유하는 입법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국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응하여 원폭피해자들의 현황과 미래 선호를 파악하는 국회 내 연구가 필요함

-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당시 피폭자의 10%가 일제강점기 이주, 징병·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으로, 조선인 피폭자의 수는 7만여 명으로 추정됨

[표 1]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국회 발의 추이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강기정의원등 79인	172053	원자폭탄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	2005-06-16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조승수의원등 23인	172353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05-08-04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유기홍의원등 51인	172965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위안부·사할린억류자·원폭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결의안	2005-10-18	2008-05-29	임기만료 폐기
조진래의원등 103인	180225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08-11-25	2012-05-29	임기만료 폐기
조진래의원등 13인	1813641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대일 배상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2011-10-27	2012-05-29	임기만료 폐기
김정록의원 등 10인	1903054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2-12-07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이학영의원 등 17인	190391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02-28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이재영의원 등 11인	1905013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05-20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김제남의원 등 11인	1905421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13-06-12	2016-05-19	대안반영 폐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91869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016-05-18	2016-05-19	원안가결
김상희의원 등 17인	20148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14	2020-05-29	임기만료 폐기
김중희의원 등 10인	201568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20	2019-04-05	원안가결
김태호의원 등 12인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6-02		소관위 심사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10월 15일 검색

-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국가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2003년 2세대 피폭자 활동가 김형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본격화되어 2016년 12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5월 시행됨
 - 그러나 현행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원폭피해자 1세대만 포함하고 2·3세대는 배제하고 있어, 원폭피해자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 실질적 지원은 미흡한 상태임
 - 21대 국회에서 김태호 의원 등 12인 의원은 2·3세대 피폭자 문제, 국가적 기념사업 등 관련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 한국인 원폭피해자 관련 선행연구는 피폭자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정치적 인식과 맞물려 본격적 연구 자체가 여전히 부족한 수준임
- 일차적으로 1945년 8월 원폭투하 당시 조선인 피폭자의 피해규모 자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재하며 일부 추정이 존재할 뿐임
 - 1972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조선인 피폭자 규모를 7만여명으로 추정, 사망자 4만, 생존자 3만 중 귀국자 2만 3000명, 일본 잔류자 7000명, 귀국자 중 북한으로 돌아간 피폭자를 2000명으로 추산
 - 1979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시 원폭재해지편집위원회가 발간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재해』는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를 4-5만 명, 나가사키에서는 1만 2000-1만 4000명으로 추정
 -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로는 원폭피해자원호협회 합천지부 피폭자 실태조사(1974),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실태조사(19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피폭자 실태조사(1990),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한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 및 건강실태조사(2004) 등이 산발적으로 존재
 - 2017년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원폭피해자 현황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2018),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육구 조사(2020), 원폭피해자 2세 건강수준에 대한 연구(2022) 등을 진행
 -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일본 이주, 강제징용·징병의 역사적 맥락, 해방 이후 조선인 피폭자의 일본 밀항, 수용소 체류 및 일본에서 피폭자로 인정받는 투쟁 과정, 경남 합천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국내 피폭자(1세대는 물론 2·3세대) 실태와 투쟁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 피폭자에 대해 무지, 무관심한 현실에서 연구의 양 자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2) 연구의 방법

- 본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 수시과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과의 미래대화> 연구에 바탕해,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을 환기하며 원폭피해자 관련 향후 입법 방향을 제안함
 - 본 연구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합천 평화의 집 등 국내 원폭 피해자들 및 관련 기관이 집중된 합천의 원폭피해자, 원폭피해자 연대 단체, 일본의 피폭자 연대 단체, 활동가, 피폭 소송 관련 법학자, 연구자 등의 인터뷰를 진행함

[표 2] 원폭피해자 및 활동가, 연구자 주요 인터뷰 현황

구분	일시	인터뷰 내용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23.5.28. 2023.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폭피해자 투쟁 연혁 • 특별법 개정 요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2023.5.28. 2023.8.9 2023.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폭피해자 투쟁 연혁 • 특별법 개정 요구 • 반핵평화 글로벌 시민연대
한국원폭피해자2세환우회	2023.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폭피해자 2세 문제와 특별법 개정 요구
한국원폭피해자구원시민회 (도요나가 게이사부로 회장)	2023.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인원폭피해자 연대 역사
ICAN 국제운영위원회 (카와사키 아키라 운영위원)	2023.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금지조약(TPNW)과 피폭자 연대, 국회의 역할
타무라 카즈유키 히로시마대 명예교수	2023.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검은비' 소송 및 피폭자 원호법 체계
가네코 데쓰오 일본 원수급 대표	2023.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피폭자 원호법 체계 진화 및 재외 피폭자 인정투쟁
야마구치 히비키 RECNA 객원연구원	202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사키 내 피폭자 인정투쟁 역사 및 향후 과제
하야나기 카즈노리 모리카와 유지 나가사키대 교수	202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피폭자 문제 역사와 과제

1) 한국인 원폭피해자 2·3세대 원폭피해자 정의 포함 문제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물론 2·3세대 관련 공식적 실태조사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음
- 한국인 원폭피해자 2·3세대가 겪는 질환과 생계 고통은 2000년대 초 고 김형률 원폭피해자2세 활동가가 주도한 인권운동을 통해 알려짐
 - 고 김형률 활동가는 2002년 3월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스스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원폭피해 유전으로 인한 질환에 시달리는 후손들의 인권회복, 반핵평화운동을 전개함
 - 2003년 8월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총 8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진상 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¹⁾ 원폭피해자 2세²⁾는 일반국민에 비해 심근경색·협심증(남성 81배, 여성 89배), 우울증(남성 65배, 여성 71배), 빈혈(남성 88배, 여성 21배), 유방양성종양(여성 64배), 천식(남성 26배, 여성 23배), 정신분열증(남성 23배, 여성 18배), 위·십이지장 궤양(남성 9.7배, 여성 16배), 갑상선 질환(남성 14배, 여성 10배), 간암(여성 13배), 백혈병(여성 13배), 뇌졸중(남성 6.1배, 여성 4배), 고혈압(남성 4.8배, 여성 3.5배), 대장암(남성 7.9배), 당뇨병(남성 3.4배, 여성 4배), 위암(여성 6.1배)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신향진 2021, 14).³⁾
 - 원폭피해자의 자녀(2세) 및 손자녀(3세)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각각 15,414명과 26,424명으로 추정되나,⁴⁾ 등록 전에 사망한 원폭피해자 수가 다수 있을 것이므로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수도 앞의 추정치보다 많을 수 있음(신향진 2021, 14).

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국가기관 최초로 원폭 1세·2세 실태조사」, 2005. 2.

2)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 2세의 규모를 7,500여 명으로 추정하였고, 이 중 1,226명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9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47명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3) 우편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원폭피해자 2세들과 대조군(일반국민)의 질병이환상태(질병이 발생하는 정도)를 비교해 표준화이 환비(대조군을 기준으로 할 때 분석집단의 질병 발생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값)를 계산하였음

4) 피해자 등록 인원 4,404명에 평균 자녀 수로 각각 3.5명과 6명을 곱한 값임. 평균 자녀 수는 각각 국가인권위원회·경기도 실태보고서 및 원폭 코호트구축 및 유전체 분석연구 결과를 참조한 것임.

-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자녀(2세)의 수는 2,575명 (‘21.6월)임(신항진 2021, 14).⁵⁾
 - 2005년 4월 고 김형률은 ‘한국 원자 폭탄 피해자와 원자 폭탄 2세 환우의 진상 규명 및 인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함
 - 2005년 2건의 특별법 입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2016년 제정·공포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당초 김형률이 청원한 원폭피해자 2세를 제외하고 1세만을 피폭자로 인정함
- 11년에 걸친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과정은 1950년대 피폭 원호법을 제정한 일본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임
- 일본은 1957년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등에 관한 법률」과 1968년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다가 1994년 두 법률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함
 -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투하에 이어 1954년 미국의 비키니 만 수소폭탄 실험에 따른 일본 어민 피폭으로 일본 국내의 원수폭 금지 평화운동이 분출하면서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피단협)가 출범하고 1950년대 원폭 의료법 제정으로 이어짐
 - 일본의 피폭자 운동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연합군측에 전쟁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건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인정투쟁으로, 초기에 의료적 문제, 이후 생계지원 등 사회복지로 확대한 피폭 원호법 체계를 구축(오은정 2014)
 - 반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과정에서 한일청구권 논의에서 배제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한국 정부의 오랜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소외되었고 1970년대부터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손진두 수첩 재판, 광귀훈 소송 등에서 보듯,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원호법 체계 내 재외 피폭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소송투쟁을 전개함(김승은 2012; 이지영 2017; 양동숙 2018)
 - 국적 규정이 없이 사회복지적 고려로 만들어진 일본 원호법 체계에서 일본 재외 피폭자들은 일본 피폭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했고 2002년 광귀훈 소송으로 재외 피폭자들의 지위가 인정되면서 2003년부터 한국 적십자사가 한일 양국의 위임 하에 국내 피폭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건강 및 생활 지원을 이행
 - 한국인 피폭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소송에서 일본 ‘히바쿠샤’로서의 인정투쟁을 통해 시급한 의료, 생계 지원을 확보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인정투쟁, 전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인권운동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5) 합천군 996명, 서울 591명, 부산 536명,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231명, 대구·경북 221명

- 따라서 원폭피해자 1세가 아니라 일본 원호법 체계 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원폭피해자 2세들이 한국 정부에 건강 및 생활 지원,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한 인정을 제기하며 입법 투쟁을 전개한 것은 한국의 특수한 맥락이 드러난 결과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행 일본 원폭 원호법 체계에서 유전의 과학적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되는 2세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원폭피해자 후손을 포함하는 입법 요구는 차별화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논쟁이 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는 문제는 일본 사례에 비추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입장임
 - 주지하다시피 일본 원폭 원호법 체계는 후손을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세 피폭자 인정 소송은 패소를 지속함⁶⁾
 - 다만 일본 후생노동성은 원폭피해자 2세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관리수첩 발행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임
 - 현재 보건복지부는 원폭피해의 인체 및 유전적 영향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원폭 피해자 및 그 2세, 3세를 대상으로 코호트구축 및 유전체 분석연구를 5년간('20~'24년) 수행하고 있음(신항진 2021, 15).
 - 수행 결과는 원폭피해의 유전적 영향에 대한 정부 입장의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은 용역 결과가 개정안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
- 일본과 한국의 원폭법 제정, 진화의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지적한 바,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에서 2세를 포함하는 문제는 유전의 과학적 검증을 넘어서는 국가적 보호 프레임에 대한 논리를 제기할 수 있음
 - 국내 원폭피해자 커뮤니티에서도 1세 중심의 활동가들과 2세 운동가들 사이에 후손을 원폭피해자에 포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음
 - 원폭후유증의 유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피폭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실제 존재하는 2세 환우들의 의료 및 생활지원의 절박성 사이에 대치가 있었고, 1세들의 반대로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2세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회고도 존재함
 - 방사선의 인체 영향 및 유전에 대한 조사는 1948년 설립된 '원폭상해조사위원회'(ABCC: Atomic Bomb Casualty Commission, 현 방사선영향연구소 RERF: Radiation Effects

6)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피폭의 유전적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나가사키 원폭피해자 2세 국가배상 소송을 기각(최서은 2022)

- Research Foundation)가 지속해왔으며 대표적으로 1955년 개시한 피폭 환자 장기 추적 조사인 ‘수명조사집단연구’(LSS: Life-Span Studies)가 있음(오은정 2023)
- LSS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1948~1952년 사이 출산한 6만 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1953년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된 연구는 피폭된 부모와 아이의 기형, 사산, 저체중 등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당시 히로시마 출신 여성들을 상대로 만연한 사회적 터부에 일종의 ‘계몽’의 역할을 함
 - 피폭 영향의 세대유전 연구는 1950년대 상당한 대중적 관심을 모았음에도 초기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불완전한 비교군과 실험군 샘플링 등의 어려움으로 ABCC 초기에 중단됨 (오은정 2023)
 - 불임, 사산, 기형아 출산 등 피폭 초기 지대한 영향이 나타났던 데 비해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현실에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코호트 연구가 갖는 한계 및 비교가능한 연구 자체의 결핍은 사실상 세대유전의 과학적 입증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을 제공
 - 그럼에도 일본에서 피폭자 2세들의 소송 및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들의 개정 입법 투쟁과 관련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한다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현행 지원체계의 혁신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은 기존의 일본 원호법 체계의 진화과정을 통해 증명되는 바임
 - 특히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는 이들이 초창기 국가적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역사적 현실을 고려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 국가의 책무성 문제로 접근한다면 한국 정부는 원폭 투하의 가해국, 혹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도 아니라는 점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논리와는 별개로 2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논리가 성립함
 - 한반도 귀환 이후 원폭피해자 및 후손들이 경험해온 중첩된 고통에 대한 보호책임, 나아가 미래 한국이 견지해야 할 인권, 윤리규범의 국가비전 측면에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응답,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 입법의 논리를 세울 수 있음

2) 비핵평화공원 조성을 포함하는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

- 현행법이 규정한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 주도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개정안의 쟁점
 - 원폭피해자들이 집중된 합천 내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가 원폭피해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추모기념 사업에 대한 요구임
 -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추모기념 사업의 이행은 원폭피해자들의 숙원사업에 해당함

- 피폭 78년을 맞는 2023년 여전히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 직접적 원폭 체험, 피폭 전후 중층적 역사적 경험을 가진 피폭자들의 기억은 공식적 위상을 허용받지 못한 현실로부터,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인정투정에서 핵심적 의의를 가짐
- 이는 일본에서 원폭피해자들이 차지하는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전후 평화국가 서사에 필수불가결한 상징적 존재라는 위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 후대 교육과 국제적 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고려할 때, 선명한 대비를 이룸
-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물질적 배상 책임이라는 협소한 프레임이 아니라 비핵평화, 글로벌 인권규범, 세계시민교육 등 미래 사회의 비전,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추모기념, 이들의 한반도 시민들의 집단기억으로의 통합이 갖는 중장기적 시야가 필요한 시점임

3) 한국인 원폭피해자 미래 입법 가능성

- 고무적인 사실은 2016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시도된 개정안은 여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 20대 국회에서 현재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에서는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 힘이 현행법 개정안을 제출함
 - 최근 더욱 가시화되는 입법안의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의 지형을 고려할 때,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공통의 관심에 기반해 추진한 경험으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거의 유사함(표 3)
- 함께 지적할 수 있는 사실은 원폭피해자특별법 개정안은 경상남도, 합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지역정치 사안이라는 점
 -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최근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원폭피해자들의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며 전국적 인식 개선 과정에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여론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표 3] 최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비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의원 명단
<p>[의안번호 20148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7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에서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한국 원폭피해자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빈혈, 심장 질환, 우울증, 백혈병 및 갑상선 질환 등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피해자등이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요양병원 및 복지시설의 설립·운영과 건강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마.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을 의무화하고, 기념사업에 비해·평화박물관 건립 및 인권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p>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鎭)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송갑석(더불어민주당/宋甲錫)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p>
<p>[의안번호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빈혈, 우울증, 심근경색·협심증, 정신분열증, 위·십이지장 궤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함(안 제1조). 나. 국가에 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등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가는 피해자등이 사망한 때에는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p>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강기운(국민의힘/姜起潤) 김병욱(국민의힘/金炳旭)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두현(국민의힘/尹斗鉉) 이채익(국민의힘/李埰益) 정경희(국민의힘/丁慶姬) 정점식(국민의힘/鄭点植) 홍문표(국민의힘/洪文杓) 홍석준(국민의힘/洪碩峻)</p>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의원 명단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피해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의료복지 시설 설립 및 운영,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원폭피해자 미래 입법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타산, 원폭피해자 정의에 대한 과학적 입증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 한반도의 미래 이슈, 이머징 시티즌, 향후 국가적 정체성과 같은 전향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음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이주와 식민, 강제노동 등 구조적·인종적 차별, 원폭피폭, 귀환과 이후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가난과 질병의 수난사는 한국, 한반도 현대사에서 이들에 대한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줌
 - 일본 ‘히바쿠사’ 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의 통합,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요구됨
 - 전후 망각이 강요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을 듣는 것, 기억하기를 통해 한국, 한반도 집단기억에 자리를 잡지 못한 원폭피해자들을 통합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에서 인권, 화해, 평화를 준비하는 데로 연결되는 과제로 생각할 수 있음(김태경 2023)
 - 한국 원폭피해에 대한 집단기억은 ‘망각하기’에 가까운 것으로, 원폭을 통한 승전과 탈식민 해방이라는 신화, 이데올로기적 기억에 가려 원폭피해자들의 목소리, 원폭을 포함한 그들의 생애를 둘러싼 기억은 한국사회에서 광범하게 유통되고 재현되는 유의미한 위상을 차지하지 못함(김태경 2023)
 -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생전에 원폭후유증 치료, 일상의 지원에 대한 구호라는 생존 투쟁에 직면했다는 과거만이 아니라 이들의 생애사가 여전히 한국, 한반도의 집단기억에서 통합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현실로부터, 피폭자 개인은 물론 한국, 한반도의 정체성에 분명한 한계를 형성하며 미래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인권, 평화, 통합 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언어를 스스로 제약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판할 수 있음

1) 일본 원폭피해자 원호법 체계의 진화

- 1950년대 일본은 피폭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했고 피폭자 원호체계는 피폭자들의 대 정부 소송과정에서 진화해옴
 - 장기간의 소송 투쟁을 통해 일본 원호법 체계가 재외 피폭자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변화한 것은 일본 내 ‘히바쿠샤’라는 상징적 위상을 보여주는 예외적 사건이면서도 피폭자 정의가 당대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한일 정부의 무시, 배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1971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개칭)를 설립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원호를 요청하고 한일기본조약 체결 전후 시민연대 토대를 구축함
 - 1970년대 국내 피폭자들의 밀항, 도일 배경으로 손귀달, 손진두 소송투쟁 결과, 일본인이 아닌 재외 피폭자 피폭수첩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일본 후생성은 ‘통달 402호’를 통해 이들이 일본을 벗어나면 피폭자 관련 복지혜택을 수혜할 수 없게 조치함(이지영 2017, 63)
 - 손진두 ‘수첩재판’은 1974년 후쿠오카 지방법원 승소, 1978년 최고심 승소
 -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발족 등 일본 시민사회,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 국내 피폭자운동(귀환동포)의 네트워크가 구축됨(오은정 2018)
 - 한일 피폭 시민연대를 바탕으로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원폭법 적용은 2002년 최종 승소 판결을 성취했고 한국의 경우 적십자사가 2003년부터 절차를 실행함
 - 박귀훈이 주장한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 논리는 2001년 오사카 지방법원, 2002년 오사카고등법원 승소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일본정부 항소 단념으로 최종 승소
 - 이후 한국인원폭피해자들은 피폭수첩 교부 과정에서 ‘진짜’ 피폭자를 증명해야 하는 행정관료제적 절차를 통해 일본 복지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됨(오은정 2014)
 - 피폭자 2세 소송의 지속된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법체계상 피폭자의 정의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외 피폭자 인정 등을 거쳐 변화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

[표 4] 한인 피폭자의 재판투쟁 일지

제소자	재판종류	재판소 (제소일)	판결날짜	판결/국가배상	비고
손진두	수첩교부신청 각하취소소송	후쿠오카 (1972.10. 2.)	1974. 3.30.	승소	2014. 8 사망(후쿠오카) 한국인원폭피해자 문제 최초제기
			1975. 7.17.	승소	
			1978. 3.30.	승소	
신영수	수첩교부신청	동경 (1974. 7.22.)	1974. 7.25.	교부(제1호)	
정철선	건강관리수당	히로시마	1976. 5.	지급인정	한국인 피폭자에게 최초인정
김순길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1992. 7.31.)	1997.12. 2.	패소	402호 통지 위법 확정 일본 상고포기
			1999.10. 1.	패소	
동지회 회원 6인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1995.12.11.)	1999. 3.25.	패소	병합재판, 2007.11.1 원고46인중 생존자15인,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배상은 제척기간경과, 한일청구권을 이유로 원고패소
동지회 회원 40인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1996. 8.29.)	2005. 1.19.	승소	
			2007.11. 1.	승소/패소	
곽귀훈	피폭자원호법 재판	오사카 (1998.10. 1.)	2001. 6. 1.	승소/패소	국외거주자 최초수당지급 판결 일본정부 상고포기
			2002.12. 5.	승소/패소	
			2002.12.18.		
이강녕	피폭자원호법 재판	나가사키 (1999. 5.31.)	2001.12. 6.	승소/패소	2003.3.1 <402호 통지폐지> 수당지급주체를 도도부현으로 판결
			2003. 2. 7.	승소/패소	
			2006. 6.13.	승소/패소	
피폭자 6인	한국미쓰비시 재판	한국부산 (2000. 5. 1.)	2007. 2. 2.	패소	시효소멸로 판결
이재석	국가배상재판	오사카 (2001.10. 3.)	2003. 3.20.	승소/패소	원고/피고 상고포기
최계철	수당재판	나가사키 (2004. 2.22.)	2004. 9.28.	승소	피고 상고
			2005. 9.26.	승소	
	시효재판	나가사키 (2004. 5.18.)	2005.12.20	승소/패소	재역전 승소로 최초로 국가배상명령
			2007. 1.22	역전패소	
장례비각하 취소소송	나가사키 (2004. 9.21.)	2008. 2.18	재역전승소		
		2005. 3. 8.	승소	나가사키 시 상고 단념	
			2005. 9.26.		승소
이상엽	수첩재판	히로시마 (2005. 6.16.)	2006. 9.26.	패소	2007.4 사망(가족승계)
			원고 항소	항소 후 미확인	
주창윤	수당재판	히로시마 (2005. 6.16.)	2006. 9.26.	패소	원고 항소이후 상황 미확인
				항소	
제한피폭자 7인	수첩재판	오사카 (2006. 8. 1.)	미확인	2008.2. 생존자 2643명, 수첩취득자 2420명 2018년 3월 현재 대한적십자에 등록된 국내원폭피해자 2344명	
정남수	수첩재판	나가사키 (2007. 2.21.)	미확인		
이흥현 씨 외 2인	피폭자 원호법 재판	오사카	2015. 8.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재외국인 치료비 전액 보상판결

출처: 정용하(2019, 18)

■ 피폭자 정의, 범위에 관련해 최근 주목되는 것은 소위 ‘검은 비’ 소송의 결과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발생한 ‘검은 비’ 관련 피폭자들을 피폭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에 폭심지로부터 반경에 따른 피폭자 정의가 조정되었다는 점⁷⁾

- ‘검은 비’ 소송 승소는 일본 정부가 원폭 원호법의 피폭자 정의에 따라 규정한 지역 내에 있지 않았으나 일명 ‘검은 비’에 의한 피폭 피해를 주장한 원고들에 대한 국가 측 항소를 기각한 2021년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판결을 말함
- 2021년 7월 스가 정부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승소가 확정됨

[표 5] 일본 정부 피폭자 정의⁸⁾

1. 원폭투하 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시 등 일정 구역 내에 있던 자
2. 원폭투하 2주 이내에 일정 구역 내에 입회한 자⁹⁾
3. 원폭투하 시 또는 후에 신체에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사정 하에 있던 자
4. 당시 1.~3.에 해당하는 자의 태아였던 자로, 피폭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

[표 6] 한국 정부 원폭피해자 정의¹⁰⁾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 1976년 일본 정부는 ‘검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히로시마 피폭 중심지에서 북서쪽으로 길이 19km, 폭 11km 타원형 지역을 ‘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폭자 건강 수첩을 발급함(박세진 2021)

7) ‘검은 비’ 소송의 현황에 대해서는 히로시마대 명예교수 타무라 카즈유키와의 인터뷰(2023.8.5)

8)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原子爆弾被爆者に対する援護に関する法律) 제1조, 제2조(이지영 2017, 62)

9) 폭심지로부터 반경은 당초 2km에서 최근까지 변화해왔음(정연 외 2018, 50-52). [표 4] 참조

10)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 이 특례구역 바깥, 피폭 중심지에서 약 8-29km 지점의 히로시마 주민들의 ‘검은 비’ 피해는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가 주민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기존 특례지역의 5배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박세진 2021)
- 이후 2015~2018년 소송이 진행되어 2020년 1심 승소 판결이 나왔고 당시 아베 내각이 항소를 지시했으나 2021년 2심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스가 내각은 상고를 포기함

[표 7] 일본 정부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

구분	주요 내용
1957년	원자폭탄 피폭자 의료 등에 관한 법률(원폭의료법) 시행 -피폭자건강수첩 교부(약20만명):구 나가사키시 및 히로시마와 그 인접구역 -의료급여: 인정질병에 대한 의료급여 개시 -건강진단:모든 피폭자 대상 무료 건강진단(연2회/정기)실시
1960년	특별피폭자제도 신설 -2km이내 피폭자를 특별피폭자로 규정하고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 무료화 -인정질병 피폭자의 인정질환 이외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액 무료화 의료수당 신설 -인정질병 피폭자에 대해 의료수당 지급
1962년	특별피폭자의 범위요건 확대 -피폭지로부터 2km이내 직접피폭자 → 3km이내 직접피폭자
1965년	희망건강진단제도 개시 -정기건강진단 이외 피폭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건강진단(연2회)실시 특별피폭자의 범위요건 확대 -직접피폭자만 인정 →투하 후 3일 이내 입시(入市) 피폭자 포함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원폭 특별조치법) 시행 특별수당 신설 -인정질병 피폭자에게 특별수당 지급 개시 건강관리수당 신설 -특별피폭자이며 조혈기능장애 등 일정한 질병(7종의 장애분류)에 걸린 사람 중, 고령자(62세 이상), 신체장애인, 모자세대 어머니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강관리수당 지급 개시(인정기간은 1년 혹은 3년) 개호수당 신설 -특별피폭자이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개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개호: 자택이나 시설 등에서 요양이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비의료적 서비스)
1969년	장제비 신설 -특별피폭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지급 건강관리수당 지급대상 확대 -수정체 혼탁에 의한 시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질병을 지급대상 질환에 추가

구분	주요 내용
1971년	건강관리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고령자 연령요건 65세 이상 → 60세 이상
1972년	건강관리수당 지급대상 확대 -고령자 연령요건 60세 이상 → 55세 이상 피폭지역 확대 -히로시마 아사군 기온쵸 네 지역 추가
1973년	건강관리수당 지급대상 확대 -연령요건 55세 이상 → 50세 이상
1974년	건강관리수당 지급대상 확대 -연령요건 50세 이상 → 45세 이상 -대상질환에 호흡기기능장애, 운동기능장애 추가 -연령조건, 장애자요건, 모자세대요건 폐지 특별피폭자와 일반피폭자 구분 폐지 -모든 피폭자의 일반질병 의료비 본인부담액 무료화 -건강관리수당, 개호수당 등 지급대상: 특별피폭자에서 모든 피폭자로 확대 특별수당 지급대상 확대 -인정질병피폭자로서, 인정되는 부상이나 질병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특별수당을 지급 건강진단 특례구역 신설 -피폭지역 외의 주변지역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무료건강진단 실시
1975년	보건수당 신설 -폭심지에서2km 구역 내에서 피폭된 자에게, 질병 발병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보건수당 지급을 개시 가족개호수당 신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개호수당 급 가능
1976년	건강진단특례구역 확대 -나가사키 폭심지에서6km 주변 정촌, 히로시마 구 아사군 토모, 도야마 등 10개 지역 전역 또는 일부를 추가
1978년	건강관리수당 지급대상 확대 -대상질환에 궤양을 동반하는 소화기기능장애 추가
1979년	피폭2세 건강진단 사업 실시
1981년	의료특별수당 신설(월98,000엔) -인정질병 피폭자로서, 인정되는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종래 지급되어온 특별수당과 의료수당을 통합. 소득제한 폐지 보건수당(월24,000엔) -원폭의 상해작용 영향으로 신체상 영향이 있는자, 또는 만 70세 이상의 독거생활자에게는 통상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보건수당 지급 원자폭탄 소두증수당 신설9월33,600엔) -소두증환자에게 소두증수당 지급 개시
1988년	모든 피폭자 대상 무료 암 검진 실시
1991년	건강관리수당 수급기간 연장 -갱신기한이 1년인 장애 분류 →3년, 3년 장애분류→5년

구분	주요 내용
	<p>각종 수당 소득제한 완화 및 증액 개호수당 대폭확대 -월 한도액 40,500엔 → 경증 63,000엔, 중증 94,500엔</p>
1995년	<p>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 원호법) 시행 *재외피폭자 원호에 관한 규정 조문은 없음 특별장제비 신설 -피폭자 중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하고서 장제비 제도의 대상이 되기 전에 사망한 유족에 대하여 특별장제비 지급 특별수당,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개호수당 요건 중 소득 제한폐지</p>
2002년	<p>건강진단 특례구역 추가 -나가사키 폭심지에서 12km이내 구역을 제2종 특례구역으로 추가</p>
2003년	<p>건강관리수당 지급기간 폐지 -수급기한 원칙 폐지(영구적 지급) *예외로서 철분결핍성 빈혈, 궤양은 3년, 갑상선기능항진증과 백내장은 5년</p>
2008년	<p>해외에서부터 수첩교부 신청 가능</p>
2013년	<p>원폭증 인증 심사 개정</p>
2016년	<p>피폭2세의 일반검진 내용에 다발성골수종 항목 추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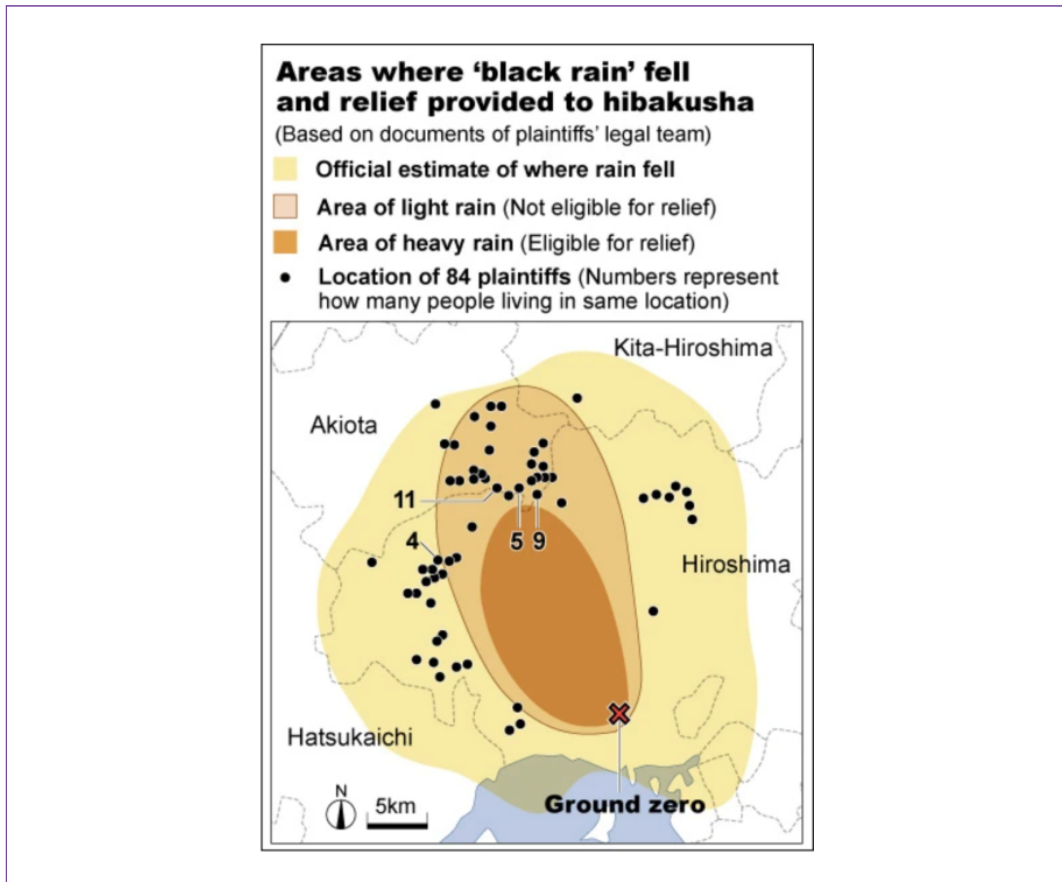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원자폭탄 피해자 대책', 정연 외(2018, 50-52)에서 재인용

- 국가가 정한 피해자의 요건, 정의가 확장된 사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미나마따병’ 피해자들의 최근 승소 판결에서도 찾을 수 있음¹¹⁾
 - 1995년 ‘정치적 화해’ 이후 생계적 지원이 절실한 다수의 ‘미나마따병’ 환자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정부와 타협을 선택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남은 간사이 지방 원고들이 1997년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은 최근까지도 진행형
 - 1956년 ‘미나마따병’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1970년대 일본 정부가 ‘미나마따병’ 인정 요건을 강화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배상에서 제외되었음
 - 1997년 간사이 승소 판결 이후 고령으로 많은 환자들이 이미 사망했으나 ‘미나마따병’ 인정을 위한 소송이 지속되는 과정은 당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피해자 정의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사실을 보여줌

11) ‘미나마따병’ 사례 현황에 대한 지적은 전 일본 사회당 의원 가네코 데쓰오 인터뷰(2023.8.6)

- 결과적으로 해당 사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 적용은 진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정의를 2·3세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치계의 초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 ‘검은 비’ 소송 결과 피폭자 정의 반경 확장



출처: The Asahi Shimbun(2021)

■ 한국인 원폭피해자 입법 방향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국가적 인정과 통합은 이주, 식민, 전쟁, 피폭, 분단, 한일관계, 평화 구축 등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임
- 한국 사회가 원폭피해자들에 가진 책임은 이들의 귀환 이후 원폭피해자 문제의 중층적 역사성, 정치적 함의를 마주하는 대신 한일협정 협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인정투쟁’을 오랜 무관심과 소외 속에 남겨두었다는 점
- 2·3세대를 포함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요구와 함께, 추모·기념사업 시행을 통해 사회 전반적 인식과 역사적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탐색이 필요함
 - 원폭피해자법(제14조 기념사업)은 국내 원폭피해자 추모,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추모모역 및 위령탑, 그 외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추진일정이 본격화되지는 않음
 - 2021년 11월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에서 추모시설 건립을 의결하고, 추모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용역(2021.12-2022.6) 결과에 따라 추모시설 추진을 제안한 상황
 - 현재 생존 원폭피해자들은 고령(평균 83.3세)으로, 원폭피해자단체는 장기간에 걸친 국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몰이해를 극복하고 후대를 위한 추모·교육의 장으로서 비핵평화박물관 등 건립을 통해 합천을 비핵·평화·정의에 대한 담론, 실천을 발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
- 한반도, 역내 비핵평화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국회는 인류 유일의 핵무기 참사를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갖는 상징적 지위에 눈을 돌리고 이들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인정, 후손들에 이르는 고통을 치유하는 입법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승은. (2012). 재한(在韓)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과 교섭태도(1965~1980), 아세아연구 55(2)
- 김태경. (2023).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국가미래전략 Insight 82호, 국회미래연구원
- 박세진. (2022). “日법원, 아베 거부 '히로시마 원폭피해자 범위 확대' 인정 판결”, 연합뉴스 (2022. 7.4.)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4121200073?section=search>
- 신항진. (202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09호), 제391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11
- 양동숙. (2018).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폭 금지운동, 기억과 전망 38
- 오은정. (2014). 관료제적 문서주의 속에서 기록과 기억: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피폭자건강수첩 취득 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7(2)
- 오은정. (2018).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시민연대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그 변화, 기억과 전망 39
- 오은정. (2023). 히로시마와 후쿠시마 연구로부터의 관점, 국회미래연구원 자문회의(2023.6.27)
- 이지영. (2017). 한·일 원폭피해자의 고통의 감정 연대와 균열, 한국민족문화 62
- 정연 외. (2018).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및 건강 생활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용하. (2019). 일본의 한국인피폭자 차별과 책임: 피폭자들의 재판투쟁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2
- 최서은. (2022). “일본 법원,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2세 국가배상 소송 기각,” 경향신문 (2022.12.13.)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2131520011#c2b>
- The Asahi Shimbun. (2021). Suga abandons appeal of ‘black rain’ hibakusha lawsuit, July 27, 2021 <https://www.asahi.com/ajw/articles/14404287>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인 쇄 2023년 12월 26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현곤
발 행 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 쇄 처 (주)명진씨앤피(02-2164-3000)

©2023 국회미래연구원

ISSN 2983-4392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